

의안번호	2220117
의 퇴 인	김한규의원
회 답 일	2026.9.15.
추계번호	26D3685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의2(관광상륙 허가)제3항 신설	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(巡廻)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4조의2(관광상륙 허가)제4항	관광상륙허가서를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의2(관광상륙 허가)제3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의2(관광상륙 허가)제4항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관광상륙허가 시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, 한 번의 허가로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도 기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- 개정안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기기 도입 및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법무부는 2025년도에 제주항 및 강정항(서귀포)에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

대 38대를 시범 도입하였음¹⁾

- 관련 예산으로는 2025년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52억 5,100만원, 2026년 제주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보완요원 확충으로 5억 200만원, 2027년 제주크루즈터미널 자동심사대 유지관리로 3억 9,600만원(안)이 편성되었음
- 우리나라 크루즈 입객이 2023년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, 제주항 및 강정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추가수요와 인천항·부산항 등에서 신규 도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

[표 1] 항만별 크루즈 입항객 수: 2023~2025년

(단위: 명)

구분	부산	인천	제주	서귀포	속초	여수	기타
2023	270,822	2,719	43,654	96,096	8,654	2,294	692
2024	268,510	14,262	311,498	722,997	10,683	1,907	6,010
2025	399,165	24,912	292,948	868,247	7,163	8,213	1,602

자료: 한국관광데이터랩 크루즈통계

- 다만,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요인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허용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대 수요 감소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움
 -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허용 시 한 번의 관광상륙허가로 여러 항만을 입항할 수 있으므로 심사 건수가 감소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및 복수항 관광상륙허가 근거 신설 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제주항 10대, 강정항 28대로 총 38대 도입으로 52억 4,700만원 집행하였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